

보도시점 2024. 6. 19.(수) 16:00
6. 20.(목) 조간

배포 2024. 6. 19.(수) 09:00

농업-식품산업 간 연계 발전 촉진할 ‘기능성원료은행’ 문 열어

- 기능성 식품소재 생산·보관·표준화하는 기능성원료은행(전북 익산) 준공식 개최
- 제품 유형에 적합한 원료를 추천하고 시제품 개발·평가를 지원하며 기능성 표시식품 인허가를 컨설팅하는 등 기능성표시식품 제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기능성원료의 국산화와 농업-식품산업 간 연계 발전을 촉진할 ‘기능성원료은행’ 준공식이 6월 19일(수) 개최된다고 밝혔다.

기능성원료은행은 국산 농산물에서 유래한 기능성 식품소재를 생산·보관·표준화하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시설로, 기능성원료를 생산·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, 원료를 표준화할 수 있는 고해상도질량분석기 등 200여개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.

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2020년 전북 익산시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후 2022년 8월 착공한 본건물은 총사업비 150억 원(국비 105억 원, 지방비 45억 원)을 투입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연면적 1,872m², 지하 1층, 지상 3층 규모로 준공되었다.

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, 전라북도, 익산시,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,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, 그린바이오 거점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.

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8년 3조 원에서 2022년 5.4조 원*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5.1%로 성장하는 추세이다. 또한 2020년 12월부터 ‘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’ 시행으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**할 수 있게 되면서 6월 현재까지 379건의 기능성표시식품이 등록되는 등 기업 및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큰 상황이다.

* 식품의약품안전처 「2022년도 식품 등의 생산실적」

** 정보표시면에 “A(기능성)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B(원료)가 들어있음”라고 표기

기능성원료은행은 기업이 다양한 국산 기능성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·장비를 구축함으로써 제품 유형에 적합한 원료를 추천하고 시제품 개발·평가를 지원하며 기능성표시식품 인허가를 컨설팅하는 등 기능성표시 식품 제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.

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“기능성원료은행을 통해 영세한 식품 기업이 손쉽게 국산 기능성원료를 생산·공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라며, “국산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농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붙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 비교

담당 부서	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	책임자	과 장	김기연 (044-201-2131)
		담당자	사무관	황서연 (044-201-2138)



붙임

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 비교

□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에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,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

** 기능성표시식품 등록 건수 : 379건('24.6월 기준)

분류		건강기능식품	기능성표시식품 (일반식품)
정의		-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(이하 기능성원료)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	-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원료를 이용하여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제품에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 일반식('20.12.29.~)
법적 근거		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, 「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」 등	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, 「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」
원료		고시형 96종(기능성원료 68종, 영양성분 28종), 개별인정형 324종('23.1.기준)	고시형 기능성원료 29종, 개별인정형 원료 * 영양성분 28종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와 상관이 없이 가능 및 함량의 표시·광고 가능
제형		정제, 캡슐, 환, 과립, 액상, 분말, 편상, 페이스트, 시럽, 젤, 젤리, 바, 필름(13개) *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	통상적 일반식품 제형 * 단, 다음 제품의 경우 기능성 표시 불가 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제형(정제, 캡슐 등) ② 주류·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③ 건강민감계층(어린이, 임산부) 대상 제품 ④ 당, 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
성분함량		1일 섭취기준량 이상	건기식 1일 섭취기준량의 30% 이상, 최대함량기준 이하
표시	기능성 표시방법	“A(기능성)에 도움을 줄 수 있음” *주표시면	“A(기능성)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B(원료)가 들어있음” *정보표시면
	필수 표기사항	(주표시면) 건강기능식품 명시 (정보표시면) 예방·질병치료 제품이 아님, 기능성분 함량 및 기능성	(주표시면)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(정보표시면) 예방·질병치료 제품이 아님, 기능성분 함량 및 건기식 1일 섭취기준량, 균형 잡힌 식생활 권장 문구
	도안	건강기능식품 도안	없음
	심의	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 사전심의	산업협회 표시광고 사전심의
품질기준		원료와 식품 모두 GMP 업체에서 제조·가공해야 함	원료 : GMP 업체에서 제조 식품 : HACCP 업체에서 제조·가공
제품 예시			 * 문구: 본 제품에는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이눌린과 카카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